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2502 판결 [건물명도(인도)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26.

판결 선고 2024. 10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부산 기장군 C 일반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2층 245.92㎡, 3층 66.44㎡를 인도하고,
나. 13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의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건물에 관한 2018. 3. 1.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1,300만 원(연체 차임 2,300만-보증금 1,000만 원) 지급 청구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박민수